

해외 법제 최신 동향

제 목 : 해외 증인에 대한 최초 영상신문 실시

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방법으로 LA 소재 증인에 대한 한국법원의 증인신문을 해외 최초로 실시하였음

1 개요

- '18. 1. 12.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재판중인 민사소송 사건의 증인신문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영상신문으로 진행하였음
- 퇴직금 청구 등 사건의 핵심 증거서류 작성경위에 대하여 2시간 동안 속초 지원에 출석한 원·피고 측 대리인이 LA 소재 증인에게 신문
- ※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16. 9. 30.부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가능해진 이후, 해외에서 최초로 진행된 영상증인신문임

민사소송법 제327조의 2 [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]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**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.**

1. **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**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2. 증인이 나이, 심신상태,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, 신문사항의 내용,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

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 [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]

- ①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,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법관, 당사자,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**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** 법원 안에 설치하되, 필요한 경우 **법원 밖의 적당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.**

2 진행경과

1.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

- 속초지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해외 영상신문 필요성 요청
- 대법원은 외교부에 LA 소재 증인이 LA 총영사관에 출석토록 협조요청
- 법무협력관은 법원행정처·증인과 연락 및 증인신문 감독업무 수행

2. 영상증인신문 시스템

-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법정 및 LA 총영사관 영상신문실에 웹카메라 및 음향장비가 부착된 컴퓨터 설치하여 인터넷으로 연결
- 속초지원의 재판부·원고·피고는 법정 스크린으로 증인의 얼굴을 보고, 증인은 모니터로 속초지원에서 제시되는 증거서류까지 보며 질문에 답변
- 국내 재판과 마찬가지로 증인의 증언은 법정녹음시스템을 통해 녹음

3 향후전망

1. 해외 영상신문 확대예상

-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는 법원행정처에서 민사소송 관련 영사송달 촉탁서류가 연간 500여건 이상 송부되어 오는 등 관내 약 70만 명의 한인들의 본국 소송 관련건수가 상당한 수준
- 이번 영상증인신문 사례 홍보로 향후 해외 영상신문 수요 증가 예상
- ※ 법원행정처 사무관 2018. 3.부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최초 파견예정 ☑